

[] 나무의사 []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신청내용	자격종목		
	재발급 사유	훼손 분실	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6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자격증 발급기관 귀하

※ 자격증 발급기관은 「산림보호법」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.

신청인 제출서류	1.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(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×4.5cm 증명사진 1장	수수료
-------------	--	-----

